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5. 7.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농기계임대 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 발생 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기존의
내용을 존치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 한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한다.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③ (생략) ④ <u>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u>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u>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u>